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9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12일

발 의 자: 최호정, 고광민, 김규남,
김혜영, 옥재은, 유정인,
이경숙, 이상욱, 이종태,
이희원, 임춘대, 정지웅,
채수지, 최윤희, 허·훈
의원(15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가능한 내국인주민을 주된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적·인종 등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도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의 지원과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국적·인종·종교·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나. 제4조의3 이하의 임산부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의 지원과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의3).
- 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계속 거주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4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별첨)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인종·종교·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3 중 “**임산부**”를 “임산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임산부**”를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경과조치)로 하고, “이후 임신한 사람”을“현재 지원 대상자부터 소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② <u>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인종·종교·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u></p>
<p>제4조의3(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u>임산부</u>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조의3(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u>임산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p>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임산부</u></p>	<p>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p> <p>1. -----</p> <p style="margin-left: 20px;">-- <u>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u></p>

<p>2. (생 략)</p> <p>② ~ ⑦ (생 략)</p> <p>부칙 <제8397호, 2022.4.28></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22년 7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p>제2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2년 7월 1일 <u>이후 임신한</u> 사람부터 적용한다.</p>	<p><u>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u></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p>부칙 <제8397호, 2022.4.28></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u> 시행한다</p> <p>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제 4조의4의 지원대상은 2022년 7월 1일 <u>현재 지원 대상자부터</u> 소급 적용한다.</p>
--	---